

논문심사 규정

2020.12.26

1. 본 규정은 한국생활환경학회에 투고한 제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원고의 투고

- (1) 투고용 원고는 다른 논문집에 게재되거나 심사 중이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 (2) 투고자는 논문의 내용과 학술적 성과가 본 학회 논문집의 발간 취지와 부합하다는 것을 논문투고서의 작성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3) 논문원고의 접수와 동시에 논문의 심사료를 납부하며 게재확정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논문의 심사위촉 및 방법

- (1) 논문의 원고는 2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 (2)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의 내용별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4. 평가

원고는 심사위원이 심사한 후 편집위원이 심의한다. 심의 시,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은 경우에 재수정을 요청한다. 이후 편집위원장이 원고의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는 원고내용의 수준과 연구 성과의 학술적 공헌도에 대하여 독창성, 유용성, 완성도, 신뢰도 등을 평가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논문의 심사위원은 다음의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① 논문 주제 및 연구 내용의 적합성과 독창성
 - ② 논문전개의 논리성과 연구방법의 적절성
 - ③ 학문발전의 기여도
 - ④ 논문 양식과 논문서술의 적합성
- (2)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용 논문 심사 판정서」에 따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별첨] 심사위원용 논문 심사 판정서 양식 참고
- (3) 심사위원은 최대 3회(초심+재심 2회)의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재심결과가 다시 “수정 후 재심”일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심사위원은 원고의 세부지적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와 심사위원 사이에 수정요구 내용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해 익명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의견교환을 통해 견해차이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최종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 최종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5) “게재 불가” 판정 시에는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편집위원회에게 전달하고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6) 심사위원은 비공개 위촉하며 심사위원에게 심사 위촉할 때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과 기타자료를 지상공개 할 수 있다.

5. 논문의 게재

- (1) 2인의 “게재가(수정게재 포함)” 판정을 논문 게재의 원칙으로 한다. 2인의 최종판정 중 1인의 게재가 판정과 1인의 게재불가 판정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의 판정을 결정하거나 제 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하여 2인의 “게재가(수정게재 포함)” 판정을 논문 게재의 원칙으로 한다.
- (2)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된 논문은 게재되지 않는다.
- (3) 수정게재의 경우 심사자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4)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저자가 게재를 철회하거나 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심사기간과 수정기한

- (1) 일반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하며, 다시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즉시 대체한다. 빠른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원고를 수령한 후 7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독촉통보를 하며, 다시 4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면 심사위원을 즉시 대체한다.
- (2) 수정이 통보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90일 내에 수정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90일 내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는 투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수정재심의 경우 원심사자는 재심의뢰 받은 후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단, 심사자의 연기 통보가 있을 시 재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 (4) 심사결과에 의하여 저자는 수정 보완을 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른 수정 사항을 논문수정보고서에 항목별로 기술하고, 원고에는 수정 내용을 본문과 구분할 수 있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5) 심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논문투고양식 내 이의신청서를 사용한다.
[별첨]이의 신청서 양식 참고

7. 위조, 변조, 중복게재, 표절관련 규정

본 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중 위조, 변조, 중복게재, 또는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1)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하여 게재

및 삭제 여부를 판정한다.

- (2)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윤리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판정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판정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3) 해당 논문의 학회논문집 게재를 취소하고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논문집에 공고한다.
- (4) 해당 논문의 저자는 게재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본 학회 논문집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8.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별첨]

이 의 신 청 서

투고일자		투고자명	
신청자명		소속/직위	
전화번호		e-mail	
이의신청 논문제목			
〈이의 신청 내용〉			
<p>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한국생활환경학회”에 투고한 논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며 아래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에 동의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판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저자는 이의신청서(학회 양식) 및 해당 논문(마지막 심사를 받은 상태로 제출)을 추가심사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이의신청 접수가 결정되면 재심사는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알리고 이의신청 심사를 의뢰하되, 이의신청 심사를 거부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 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한다. 이의신청 심사의 판정은 재심과 동일하게 하며,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논문의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될 수 있다.3. 이의신청과 관련 재심결과가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 재심’인 경우, 다음 호에 재투고가 가능하다. <p style="text-align: center;">이의신청일 년 월 일 이의신청자</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생활환경학회 편집위원장 귀하</p>			

[별첨]

심사위원용 논문 심사 판정서 (일반심사□, 빠른심사□)

논문제목: ○○○

투고자가 체크한 해당논문 분야 구분	건축	주거	체육	보건	의류	기타

가. 종합판정

게 재 가	수 정 게 재			수 정 재 심			게 재 불 가		
점수표	상 (매우 우수한 논문)			중 (평이한 수준의 논문)			하 (기초적 연구 수준)		
창의성 (독창성)	A+	A0	A-	B+	B0	B-	C+	C0	C-
완성도 (연구의 완성도)	A+	A0	A-	B+	B0	B-	C+	C0	C-
연구 프로세스의 성실성	A+	A0	A-	B+	B0	B-	C+	C0	C-

나. 심사의견

별지사용가능			
심사위원		소 속	
심사의뢰일	20XX.00.00	심사완료일	20XX.00.00

한국생활환경학회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위원 _____ 인(서명)

[논문 심사시 주의사항]

1. 아래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한 다음, 종합 판정의 해당 칸에 √표 해 주시고 심사의견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논문의 개괄적인 평가를 지양함). 심사의견을 타자하거나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검토사항 》

- (1) 논문의 제목이 적절한지 여부
 - (2) 연구내용에 독창성이 있는지 여부
 - (3) 이론의 전개나 연구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 (4) 연구결과가 본 학회의 학문이나 기술발전에 유익한지 여부
 - (5) 영문요약(또는 국문요약)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 (6) 논문의 체제나 인용문헌 표기 등이 투고규정 및 집필요령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2. 심사논문이 본 학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게재불가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3. 학술대회논문은 원칙적으로 논문이 아니므로 저자가 동일한 경우 표절로 보지 않습니다만, 블라인드 심사가 되고 있으므로 심사자가 평가중인 논문의 저자를 알 수 없습니다.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표절의심 학술발표논문이 있다면 심사서에 적어주시면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다른 경우 학회에서 표절로 분류하겠습니다.
 4. 초록의 구성이 목적(Purpose), 연구방법(Method), 그리고 결과(Result)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게재가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림 및 표의 적절한 구성과 영문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절치 않은 경우 게재가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논문 심사는 심사결과 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학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무 연락이 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원활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심사반려'로 처리되고 다른 심사위원을 새로 섭외하게 됩니다.)
 7. 표절의심 논문이 있을 경우, 심사의견 내에 해당 논문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8. 논문 심사비는 논문게재가 완료된 후 입금처리 됩니다.

이 논문의 심사 마감일은 20XX년 00월 00일까지입니다.

[별첨] 심사결과표

	심사의견 1	심사의견 2	최종결과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3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4	게재가	게재불가	3심 진행
11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12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13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3심 진행
14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15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단 이 경우는 수정후재심을 1차례만 진행함. 2번째 심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수정후재심이 나왔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 후 별도의 특정 의견이 없을 시 최종 수정후게재가로 결정 함